

# 이진아기념도서관 ‘스튜디오 진아’ 이용 수칙

## (2022. 01. 1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이하 “이진아기념도서관”라 한다) 스튜디오진아 내 아이디어룸, 창작룸, 편집실(이하 “스튜디오 진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스튜디오 진아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스튜디오 진아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서대문구립도서관 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시설’이라 함은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진아’를 의미한다.
- ② ‘장비’라 함은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영상 장비 및 모든 기자재를 말한다.
- ③ ‘운영자’라 함은 이진아기념도서관 스튜디오 진아 담당자를 말한다.
- ④ ‘신청자’라 함은 이진아기념도서관 스튜디오 진아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⑤ ‘이용자’라 함은 이진아기념도서관 스튜디오 진아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말한다.
- ⑥ ‘이용시간’이라 함은 이진아기념도서관 스튜디오 진아의 운영시간이며 세부 이용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청자격 및 이용기준)

- ① 신청은 ‘서대문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회원’으로 서대문구립도서관 대출자번호가 부여된 이용자가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② 만 18세 이하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 ‘만 18세 미만 이용자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1.)
- ③ 초등학교 이하 이용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스튜디오 진아 이용이 가능하다.
- ④ 이용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제5조(사용신청)

- ① 스튜디오 진아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사용 희망일의 2일 전까지 서대문구립도서관 대관신청 카테고리에서 사용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서대문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자는 제4조처럼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스튜디오 진아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하며 사용신청 접수 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는 스튜디오 진아 사용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스튜디오 진아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스튜디오 진아 사용 스튜디오 진아 중 운영자의 허가받은 사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장비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시간)

- ① 이용시간은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전 10:00~13:00, 오후 14:00~17:00이다.
- ② 정기휴관일 등 서대문구립도서관에서 지정하는 휴관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③ 스튜디오 진아 사용시간은 1일 3시간씩 오전 오후 각 1회 1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 ④ 이용자별로 한 달에 최대 4번까지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⑤ 운영자가 정한 매월 특정 조건을 달성한 이용자는 다음 한 달 동안 최대 2번 더 이용이 가능하다.
- ⑥ 코로나, 공사 등 도서관 사정에 따라 스튜디오 진아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거절,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서대문구립도서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관리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도서관 내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미풍양속 등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6. 상업적인 목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7. 신청한 이용 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
8. 밀폐된 병에 담긴 음료 이외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10. 신청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관을 양도한 경우
11.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 그 외 기타 관리에 문제가 되거나 이용 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 ① 이용자는 사용 중 스튜디오 진아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스튜디오 진아의 시설, 기자재,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손, 손실, 분실에 대하여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절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지 못한다.
- ④ 이용자가 스튜디오 진아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동반하여 사용할 시 운영자와 도서관 시설담당자의 허가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이용자는 타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자는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9조(이용자의 설비)

- ① 이용자는 시설 사용 중에 특별한 장치와 설비할 수 없다.
-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장치와 설비 시, 이를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는 30일 간 스튜디오 진아 사용이 불가하다.

1. 예약을 한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대관을 안 할 경우
2. 신청자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 대관과 사용 반납을 안 할 경우
3. 신청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대관을 할 경우
4. 대관 및 반납 시간을 어길 경우
5. 그 외에 이용 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이진아기념도서관과 스튜디오 진아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시설이용

### 제12조(준수사항)

- ① 스튜디오 진아 이용자는 서대문구립도서관 이용자 등록 후 예약 신청을 하고 운영자의 승낙을 받은 이후에 스튜디오 진아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③ 이용자는 사용 종료 후 대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이진아기념도서관 스튜디오 진아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튜디오 진아 이용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퇴실 및 확인)

- ① 이용자는 퇴실하기 전 운영자에게 각 실의 사용 상황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을 점검 받아야 한다.
- ② 퇴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퇴실 확인을 받지 않고 그냥 퇴실하는 경우 이용규정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제10조 사용제재 규정을 적용하며, 파손 및 분실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17조, 18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퇴실 확인 시 파손 및 분실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제17조, 18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대관·배상

### 제14조(대관 자격과 책임)

- ① 신청자 본인만이 대관 및 반납이 가능하며 대관 이후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 ②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거나 재대관 시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대관)

- ① 스튜디오 진아는 장비 점검,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스튜디오 진아의 모든 장비는 운영자의 허락 없이는 스튜디오 진아 외부로 반출을 절대 금지한다.
- ③ 장비 사용 시 기자재의 이상이 있을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상업적 사용금지) 스튜디오 진아 이용은 순수한 창작을 위한 작품제작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 불건전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 제17조(장비 파손 시 배상 규정)

- ① 대관 시,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파손에 대한 '장비 배상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며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붙임2.)
- ② 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서대문구립도서관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
- ③ 부분파손의 경우일지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장비에 대한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 ④ 전체 파손 장비에 대해 변상방법은 중고가 아닌 정품 인증이 되는 직접 구매한 새 제품으로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구매 시기에 정해진 정가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⑤ 배상이 완료된 장비나 기기가 1개월 이내 고장이 난다면 이용자는 같은 제품으로 교체 배상한다.
- ⑥ 같은 제품이 없을 경우 현금 보상으로 배상한다.

제18조(분실 시 배상 규정) 대관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제18조의 전체 파손 시 배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배상 금액의 납부기한) 배상금액은 파손, 분실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배상 금액 미납자)

- ① 제 20조에서 정한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 7일이 지난 이후에도 배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대문구립도서관장은 배상금액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며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 ② 납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일의 14일 이후에도 미납되었을 경우 서대문구립도서관장은 미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